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12 . . . (제 회)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2 . . .

1. 의결주문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악의·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 및 도급사업 근로자의 임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 공개 및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불자료를 제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법률 제11270호, 2012.2.1. 공포, 2012.8.2. 시행)에 따라 상습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의 제외사유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 제외사유 규정(안 제23조의2, 제23조의4 신설)

- 1)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제1항에서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체불 사업주의 인적 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법 제43조의3제1항에서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임금등

채불자료 제공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채불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채불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에 관한 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도록 규정하면서, 각 단서에서 사업주의 사망·폐업 등 명단 공개·신용 제재 제외사유와 명단 공개의 내용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법 제43조의2제1항 단서, 제43조의3제1항 단서)

- 2) 이에 ①채불사업주가 사망하거나 「민법」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②채불사업주가 폐업, 도산 또는 파산한 경우, ③채불사업주가 법 제43조의2제2항에 따른 소명 기간 종료일 또는 법 제43조의3제1항에 따른 임금등 채불자료 제공일 전까지 채불임금을 전액 지급한 경우와 같이 명단공개 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④채불임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남은 채불임금에 대한 구체적인 청산 계획 및 자금조달 방안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여 법 제43조의2제3항에 의한 임금채불정보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가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위원회가 채불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명단 공개·채불자료 제공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을 마련함
- 3) 사업주의 사망 폐업 도산 등 제재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사유로 규정하여 불필요한 제재의 남용을 방지하고, 채불 임금을 전액 지급하거나 채불 임금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한 사업주를 제외시킴으로써 채불 청산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됨

나. 명단 공개 내용, 기간 및 방법(안 제23조의3 신설)

- 1)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제4항에서 명단 공개의 구체적인 내용, 기간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 2) 이에 따라 채불사업주의 성명·상호 (채불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명칭 대표자로 한다), 나이 및 주소, 명단 공개 기준일부터 3년 이내 임금등 채불액에 관한 내용을 명단 공개일부터 3년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그 밖에 열람이 가능한 공공장소에 게시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
- 3) 명단 공개의 세부적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하여 원활한 법 집행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

다. 임금등 채불자료 작성 및 방법(안 제23조의5 신설)

- 1) 「근로기준법」 제43조의3제1항에서 임금등 채불자료 제공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채불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채불사업주의 인적사항과 채불액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면서, 체불자료의 제공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법 제43조의3제3항)

- 2) 이에 따라 임금등 체불자료를 요구하는 자는 요구자의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명칭·대표자로 한다) 및 주소, 요구하는 임금등 체불자료의 내용과 이용목적 등을 기재한 문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제공하며, 임금등 체불자료를 제공한 후 제23조의2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체불자료를 요구자에게 통지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
- 3)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법 집행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

라. 출산전후휴가 분할사용 사유 신설(안 제43조제1항 신설)

- 1) 「근로기준법」 제74조제2항에서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출산전후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분할사용이 가능한 경우를 대통령령에 위임함
- 2) 이에 따라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임신한 근로자의 연령이 출산전후휴가의 분할 사용을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만40세 이상인 경우, 임신한 근로자

에게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출산전후휴가를 분할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

- 3) 유산·사산의 위험으로부터 여성 근로자를 보호하고, 여성 근로자의 모성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마. 임신 16주전에 유산한 경우 보호휴가 기간(안 제43조제3항 제1호 및 제2호 신설)

- 1) 「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에서 임신 16주 전에 유산·사산한 여성근로자에게도 유산·사산 휴가를 주도록 규정하면서 휴가기간을 대통령령에 위임함
- 2) 이에 따라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를 유산 사산휴가 기간으로 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
- 3) 유산 사산 휴가를 사용하는 여성 근로자의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2. 0. 00 ~ 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채불사업주 명단공개 제외대상) 법 제43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채불사업주가 사망하거나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2. 채불사업주가 폐업, 도산 또는 파산한 경우
3. 채불사업주가 법 제43조의2제2항에 따른 소명 기간 종료일 전까지 채불임금을 전액 지급한 경우
4. 채불사업주가 채불임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남은 채불임금에 대한 구체적인 청산 계획 및 자금조달 방안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여 법 제43조의2제3항에 의한 임금채불정보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가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위원회가 채불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3조의3(명단공개 내용·기간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3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명단 공개일부터 3년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그 밖에 열람이 가능한 공공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체불사업주의 성명·상호(체불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명칭·대표자로 한다), 나이 및 주소
2. 명단 공개 기준일부터 3년 이내 임금등 체불액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대상) 법 제43조의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23조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43조의2제2항에 따른 소명 기간 종료일”은 “법 제43조의3제1항에 따른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로 본다.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① 법 제43조의3제1항에 따른 임금등 체불자료를 요구하는 자(이하 “요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요구자의 성명·상호(요구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명칭·대표자로 한다) 및 주소
 2. 요구하는 임금등 체불자료의 내용과 이용 목적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임금등 체불자료를 서면 또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작성할 수 있다.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임금등 체불자료를 제공한 후

제23조의2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요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의 제목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를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직상(直上) 수급인의 귀책사유”를 “귀책사유”로 한다.

제4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출산 전에 사용할 수 있는 출산전후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제43조제2항(중전의 제1항) 중 “법 제74조제2항”을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가 유산·사산휴가를”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신·구조문대비표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
부터 10일까지

제43조제3항제3호 중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을 “임신기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제23조의2(채불사업주 명단공개 제외대상) 법 제43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채불사업주가 사망하거나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2. 채불사업주가 폐업, 도산 또는 파산한 경우 3. 채불사업주가 법 제43조의2 제2항에 따른 소명 기간 종료일 전까지 채불임금을 전액 지급한 경우 4. 채불사업주가 채불임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남은 채불임금에 대한 구체적인 청산 계획 및 자금조달 방안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여 법 제43조의2제3항에 의한 임금채불정보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가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신 설>

고 인정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위원회가 체불
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3조의3(명단공개 내용·기간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3조의
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
용을 명단 공개일부터 3년간 관
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
재하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
서 게시판, 그 밖에 열람이 가능
한 공공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체불사업주의 성명·상호
(체불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명칭·대표자로 한
다), 나이 및 주소
2. 명단 공개 기준일부터 3년
이내 임금등 체불액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

공 제외대상) 법 제43조의3제1
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관
하여는 제23조의2 제1호부터 제

<신 설>

3호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43조의2제2항에 따른 소
명기간 종료일”은 “법 제43조
의3제1항에 따른 임금등 체불자
료 제공일”로 본다.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

공절차 등) ① 법 제43조의3제1
항에 따른 임금등 체불자료를
요구하는 자(이하 “요구자”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적은 문서를 고용노동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요구자의 성명·상호(요구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명칭·대표자로 한다) 및 주소
2. 요구하는 임금등 체불자료의
내용과 이용 목적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임금등 체불자료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임금등 체불자료를 제공한
후 제23조의2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요구자에게

<p>제24조(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직상(直上) 수급인의 귀책사유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3. (생략)</p>	<p>통지하여야 한다.</p> <p>제24조(수급인의 귀책사유) ----- 귀책사유 -----.</p> <p>1. ~ 3. (현행과 같음)</p>
<p>제43조(유산·사산휴가의 청구 등) <신설></p> <p>①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가 보호휴가(이하 “유산·사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휴가 청구 사유,</p>	<p>제43조(임산부의 보호)</p> <p>①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출산 전에 사용할 수 있는 출산전후 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p> <p>2. 임신한 근로자의 연령이 출산전후휴가의 분할 사용을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만 40세 이상인 경우</p> <p>3.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p> <p>②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가 유산사산휴가를 -----</p>

<p>유산·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을 적은 유산·사산휴가 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 ----- ----- ----- ----- ----- -----</p>
<p>②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p> <p><신설></p>	<p>-----</p> <p>③----- 제2항-----</p> <p>-----</p> <p>-----</p> <p>-----</p> <p>-----</p>
<p><신설></p> <p>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p>	<p>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p> <p>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p> <p>3. 임신기간-----</p> <p>-----</p> <p>-----</p> <p>-----</p> <p>-----</p> <p>-----</p>

2. (생략)	4. (현행 제2호와 같음)
3. (생략)	5. (현행 제3호와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연락처	(02) 2110 - 7397